

공익재단법인 한국교육재단 정관

제 1 장 총칙

(명칭)

제 1 조 이 법인은, 공익재단법인한국교육재단이라고 칭한다.

(사무실)

제 2 조 이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도쿄도 미나토구에 둔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목적)

제 3 조 이 법인은, 일본의 여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하여 일본 외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포함) 하고 있는 한국 국적 등의 학생에 대해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재일 한국인에 대한 교육기관 등에 조성하며, 일본에 있는 한국어 교육의 진전을 도모하고, 유능한 국제인을 양성하며, 한국학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제 4 조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상담
- (2) 한국어능력시험 관리
- (3) 한국어 변론대회 지원
- (4) 재일 한국인 교육 관계자에 대한 후원
- (5) 한국학 및 한일교류를 지원하는 사업
- (6) 그 밖에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2. 전항 제 1 호의 사업은 일본 전국 및 해외, 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업은 일본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장 자산 및 회계

(기본재산)

제 5 조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재산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2.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재산의 일부를 처분하려는 경우 및 기본재산에서 제외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승인을 요한다.

(사업연도)

제 6 조 본 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4 월 1 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 월 31 일에 끝난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제 7 조 본 법인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자산조달 및 설비투자의 전망을 기재한 서류에 대해서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이사장이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2. 전항의 서류에 관해서는 주된 사무소에 해당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사업보고 및 결산)

제 8 조 본 법인의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하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시 평의원회에 제출하고, 제 1 호 및 제 2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보고하고, 제 3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서류에 대하여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사업 보고
- (2) 사업 보고 부속 명세서
- (3) 대차대조표
- (4) 손익 계산서(정미재산 증감 계산서)
- (5)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정미재산 증감 계산서) 부속명세서
- (6) 재산 목록

2. 전항의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5 년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정관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1) 감사 보고
- (2) 이사와 감사 및 평의원 명부
- (3) 이사와 감사 및 평의원 보수 등의 지급기준을 기재한 서류
- (4) 운영조직 및 사업활동 상황 개요 및 이에 관한 수치 중 중요한 것을 기재한 서류

(장기차입금)

제 9 조 본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단기차입금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평의원회에서 평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한 평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2. 이 법인의 중요한 재산 처분 또는 양수를 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공익목적 취득재산 잔액의 산정)

제 10 조 이사장은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승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8 조 규정에 근거하여 매 사업연도,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에 공익목적 취득재산 잔액을 산정하고, 제 8 조제 2 항제 4 호의 서류에 기재한다.

제 4 장 평의원

(평의원)

제 11 조 본 법인에 평의원 3 명 이상 7 명 이내를 두다.

(평의원의 선임 및 해임)

제 12 조 평의원의 선임 및 해임은 평의원 선정위원회에서 한다.

2. 평의원 선정위원회는 평의원 1 명, 감사 1 명, 사무직원 1 명, 다음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임된 외부위원 2 명의 합계 5 명으로 구성한다.

3. 평의원 선정위원회의 외부위원은 다음 모든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 이 법인 또는 관련 단체(주된 거래처 및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사용인.

(2) 과거에 전호에서 규정한 바가 있는 자

(3)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3촌 이내의 친족, 사용인(과거에 사용인이 된 자도 포함)

4. 평의원 선정위원회에 제출하는 평의원후보자는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가 각각 추천할 수 있다. 평의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5. 평의원 선정위원회에 평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 외에 당해 후보자를 평의원으로써 적임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위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당해 후보자의 경력

(2) 당해 후보자를 후보자로 한 이유

(3) 해당 후보자와 본 법인 및 임원 등(이사, 감사 및 평의원)의 관계

(4) 해당 후보자의 겸직 상황

6. 평의원 선정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과반수를 채워 행한다. 단, 외부위원 1 명이상이 출석하고, 외부위원 1 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7. 평의원 선정위원회는 전조에서 정하는 평의원의 정수가 결여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결의 평의원을 선임할 수 있다.

8. 전항의 경우에는 평의원 선정위원회는 다음 사항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후보자가 보결 평의원이라는 내용

(2) 해당 후보자를 1 명 또는 2 명 이상의 특정 평의원 보결 평의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취지 및 해당 특정 평의원의 성명

(3) 동일한 평의원(2 명 이상의 평의원의 보결로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2 명이상의 평의원)당 2 명 이상의 보결 평의원을 선임할 경우 해당 보결 평의원 상호간의 우선순위

9. 제 7 항의 보결 평의원의 선임에 관한 결의는 당해 결의 후 4 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최종연도에 관한 정시 평의원회 종결 시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임기)

제 13 조 평의원의 임기는 선임 후 4 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최종적인 것에 관한 정시 평의원회 종결까지로 한다.

2. 임기의 만료전에 퇴임한 평의원의 보결로서 선임된 평의원의 임기는 퇴임한 평의원의 임기 만료까지로 한다.

3. 평의원은 제 11 조에서 정하는 정수에 부족하게 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후에도 새로 선임된 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평의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평의원에 대한 보수 등)

제 14 조 평의원은 무보수로 한다.

제 5 장 평의원회

(구성)

제 15 조 평의원회는 전원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권한)

제 16 조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결의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2)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등의 금액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정미재산 증감 계산서) 및 이 부속명세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잔여 재산의 처분

(6)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제외 승인

(7) 기타 평의원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는 법령 또는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개최)

제 17 조 평의위원회는 정시 평의위원회로서 매년도 6 월에 1 회 개최하는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 임시 평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소집)

제 18 조 평의위원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2. 평의위원회는 이사장에게 평의위원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제시하여 평의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결의)

제 19 조 평의위원회의 결의는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평의원을 제외한 평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과반수를 채워 행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결의는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평의원을 제외한 평의원의 3 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를 가지고 실시해야 한다.

(1) 감사의 해임

(2) 정관의 변경

(3)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제외 승인

(4)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

3.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는 의안을 결의함에 있어서는 각 후보자별로 제 1 항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사 또는 감사의 후보자의 합계수가 제 23 조에 정하는 정수를 웃도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 중에서 득표수가 많은 순으로 정수의 범위까지의 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한다.

4. 평의위원회의 진행은 평의원의 호선으로 선정된 의장이 한다.

(결의의 생략)

제 20 조 이사가 평의위원회의 목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한 경우, 그 제안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평의원을 제외한 평의원 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동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그 제안을 가결하는 취지의 평의위원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보고의 생략)

제 21 조 이사가 평의원 전원에게 평의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을 통지한 경우, 그 사항을 평의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평의원 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동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의 평의위원회에 보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회의록)

제 22 조 평의원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전항의 의사록에 의장과 출석한 대표 평의원 2 명 이상이 기명 날인한다.

제 6 장 임원

(임원의 설치)

제 23 조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 명 이상 8 명 이내

(2) 감사 1 명 또는 2 명

2. 이사중 1 명을 이사장, 1 명을 상무이사로 한다.

3. 전항의 이사장을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상의 대표이사로 하고, 상무이사를 같은 법 제 91 조제 1 항제 2 호의 업무집행이사로 한다.

(임원의 선임)

제 24 조 이사 및 감사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2.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선정한다.

(이사의 직무 및 권한)

제 25 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집행한다.

2. 이사장은 법령과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상무이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인의 업무를 분담집행한다.

3.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매 사업연도에 4 개월을 초과하는 간격으로 2 회 이상 자신의 직무집행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의 직무 및 권한)

제 26 조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를 작성한다.

2.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와 사용인에 대하여 사업의 보고를 요구하고 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제 27 조 이사의 임기는 선임 후 2 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마지막 정시 평의원회 종결까지로 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선임후 4 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마지막 정시 평의원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3. 보결로서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하는 때까지로 한다.
4. 이사 또는 감사는 제 23 조에서 정하는 정수보다 부족할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후에도 새로이 선임된 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임원의 해임)

제 28 조 이사 또는 감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태만인 경우.
- (2) 심신의 장애로 직무집행에 지장이 있거나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보수 등)

제 29 조 상근하는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평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총액의 범위 이내에서 평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보수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보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이사회

(구성)

제 30 조 이사회는 모든 이사로 구성한다.

(권한)

제 31 조 이사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 법인의 업무집행 결정
- (2)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 (3) 이사장 및 상무이사 선정 및 해직

(소집)

제 32 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결의)

제 33 조 이사회의 결의는, 결의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그 과반수를 가지고 행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제 197 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 96 조의 요건을 충족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결의의 생략)

제 34 조 이사가 이사회의 목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한 경우, 그 제안에 대하여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하여 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제안을 가결하는 취지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고의 생략)

제 35 조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 및 감사 전원에게 평의원회에 보고할 사항을 통지한 경우, 그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회의록)

제 36 조 이사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출석한 이사장과 감사는 전항의 의사록에 기명 날인한다.

(사무국)

제 37 조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직원의 사무분장, 급여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정관의 변경)

제 38 조 본 정관은 평의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이 정관의 제 3 조, 제 4 조 및 제 12 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해산)

제 39 조 이 법인은 기본재산의 멸실에 의한 이 법인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불능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공익인정의 취소 등에 따른 중여)

제 40 조 이 법인이 공익인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합병에 의하여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이 공익법인일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공익목적 취득재산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재산을 당해 공익인정의 취소일 또는 당해 합병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17 호에서 정하는 법인 또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증여한다.

(잔여재산의 귀속)

제 41 조 이 법인이 청산을 하는 경우에 가지는 잔여재산은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17 호에서 정하는 법인 또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증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장 공고 방법

(공고의 방법)

제 42 조 본 법인의 공고는 전자공고에 의하여 행하고, 공고에는 연간 기부금액과 활동실적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2.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전자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제 106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인의 최초 대표이사는 서동호, 업무집행이사는 김보엽으로 한다.

3.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제 106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특례민법법인의 해산등기와 공익법인 설립등기를 할 경우에는 제 6 조의 규정과 상관없이 해산등기일의 전일을 사업연도의 말일로 하고, 설립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

4. 본 규정은 2013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적용한다.

5. 본 규정은 2017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하여 적용한다.

6. 본 규정은 2023 년 6 월 24 일부터 시행하여 적용한다.

7. 본 규정은 2025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하여 적용한다.